

학교안전사고 관련 구상금 청구소송

소송종류	민사소송	법원명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가소○○○○○○○○ [1심]	사건유형	구상금
원고	□□□□□□□□보험주식회사	피고	인천광역시 대표자 교육감
판결선고일	[1심]2019. 10. 2. 원고패소	비고	
사건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주)■■■■■■■■(이하 '이 사건 피보험자'이라 함)에서, 이 사건사고 당시 A중 3학년에 재학중이던 피해자 소외 ●●● 학생이 2018. 6. 5.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패밀리눈썰매장을 방문하여 같은 반 급우들과 함께 눈썰매를 타고 내려오다가 도착지점에 깔려있던 부직포에 발이 접질려 다치게 되어, 좌측 족관절 외과골절, 좌측 족관절 전거비인대 및 삼각인대 파열, 우측족관절부 염좌의 상해를 입고, 관혈적정복술 등의 치료를 받은 사고가 발생하였음 ○ 원고는 이 사고 보험계약에 따라 2019. 1. 24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 측에 보험금 7,000,000원을 지급하고, 상법 제682조에 의거하여 보험자대위규정에 따른 구상권을 취득하였음 ○ 이 사고의 피해자가 재학중인 A중의 담당교사는 학생들을 인솔하여 놀이시설에서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할 때에는 사전에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없는 지를 면밀히 살펴서 학생들에게 위해요소등을 주지시키고 체험학습시간 동안 현장을 지키면서 학생들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지를 점검하여 안전위해요소를 제거해 줄 것을 요청하거나 학생들의 위험행동을 제지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배려하였어야 함에도 본건 사고당시 인솔교사는 학생들만 눈썰매장에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본건과 같은 상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 위 학교의 관리감독 지위에 있는 피고는 피해자 학생이 재학중인 A중의 인솔교사나 교장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로서 소속교원에 대한 지휘·감독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본건 상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하였으므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의해 피해자가 입은 본건 상해피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으며, 이외에 눈썰매장의 소유자인 피보험자 (주)■■■■■■■■측의 이용고객들의 안전을 배려할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고와 피보험자는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책임)에 의거 피해자가 입은 본건 상해피해를 공동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 20%: 피보험자 80%로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금1,440,000원을 구상 청구하는 소를 제기함 		
주 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판결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주)■■■■■■■■의 주의의무 위반 과실과 피해자의 과실이 결합하여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서, 학교의 학생에 보호·감독의무를 다하였다고 본 사건임 		